

족보용어 (族譜用語)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족보(族譜)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종보(宗譜)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세보(世譜)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세지(世誌)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지보(支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가보(家譜)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가첩(家牒)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

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증 증, 효, 절, 의가 특히 뛰

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본관(本貫)

시조 혹은 증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세거지를 근거로 향적(鄉籍)이라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관향(貫鄉) 또는 본(本)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동성이라 할지라도 동족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본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관적(貫籍)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서 본관대신에 관적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분관(分貫)과 분적(分籍)

후에 중에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본관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분관 또는 분적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설정된 시조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다.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옛날에는 공신이나 귀화인에게 표상의 표시로 본관이나 성씨 혹은 이름까지도 국왕으로부터 하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이니 사성이니 또는 사명이라 일컫는다. 이는 삼국시대 초부터 있었으나 특히 고려조에 들어와서 가장 많았다. 고전 문헌에 나타난 사성은 신라 35대 경덕왕 시절에 본성인 김씨가 남씨로 사성되었고, 48대 경문왕때 본성이 이씨를 안씨로 사성한 경우를 시작으로 고려 태조 때 경주 김씨가 안동 권씨, 광주 이씨가 철원 궁씨로 사성되었고 강능김씨가 강능왕씨로 되는 등 20여 성씨가 있다.

문헌비고(文獻備考)나 전고대방(典攷大方) 등의 문헌에 의하면 柳氏, 全氏, 吳氏, 黃氏, 嚴氏, 林氏, 姜氏, 南氏, 安氏, 張氏, 呂氏 등은 중국인이 동래귀화(東來歸化)한 성씨라고 하며, 중국등 외래성씨가 우리나라 성씨의 53%에 해당 한다고 하였다.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증시조가 정해짐으로써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 문에 설혹 보첩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 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증흥시킨 증시조를 중심으로 종파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증시조의 직함이나 시호(諡號) 또는 아호(雅號) 밑에 공 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1파 2파 3파로 표시하는 예도 있다.

경파(京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향파(鄉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골에서 세거해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계(先系)

시조이전의 조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세계(世系)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계통의 차례, 곧 가계를 일컫는 말이다.

선대(先代)

선조의 여러 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나 보학상의 선대라 함은 시조이 후 상계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말손(末孫)

하계의 예손들을 말손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순록이라 한다.

방조(傍助)

6대조이상의 그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族助)

족조란 방조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사조(四祖)

내외4조의 준 말로서 부(父), 조(祖), 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의 총칭이며, 현조(顯祖) 명성이 높이 드러난 명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종손(宗孫)

종가(각 종파의 만집)의 만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장손(長孫)

종가가 아닌 차자손(次子孫)집의 큰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사손(嗣孫)

한 집안의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사손(祀孫)

봉사손(奉祀孫)의 준 말로서 사손(嗣孫)이 제사를 봉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관자(冠者)

관례(冠禮)를 치른 남자. 또는 정년(丁年)에 이른 남자.

계자(笄者)

(여자의) 성년례(成年禮)

봉사(奉祀)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로 사(士), 서인(庶人)의 봉사 대수(代數)와 봉사의 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서인의 가묘(家廟) 설치와 제사규정은 고려 공민왕 2년(1390)에 정몽주(鄭夢周) 등의 건의에 의하여 마련되었는데 대부(四品)이상은 3대, 육품(六品)이상은 2대, 칠품(七品)이하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하게 하도록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육품이상은 3대, 칠품이하는 2대, 서인은 1대 부모만을 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명종 연간(1545~1567)에 이르러 관품(官品)에 구별없이 4대봉사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조 후기까지 존속하였다. 봉사란 봉제사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봉향(奉享)한다는 뜻이다.

친진(親盡)

제사를 받드는 대의 수가 다했다는 뜻이다. 예컨대 4대봉사를 행하는 가문의 경우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친진 또는 대진(대진)이라고 하는데, 친진된 조상의 신주는 무덤앞에 매안하며 세일제(歲一祭)를 봉향한다.

후사(後嗣)

대를 잇는다는 후승(後承)의 뜻으로서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양자(養子)

후사가 없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 동행렬 동족 중의 몸에서 출생한 자를 입후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자라고 하는데,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수양자(收養子)

3세(歲)이전에 입양하는 양자.

시양자(侍養子)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사후양자(死後養子)

양부모가 구몰(俱歿)한 후에 입후하는 양자.

백골양자(白骨養子) (신주양자)

양자 자신이 죽은뒤에 입후하는 양자.

서얼(庶孽)

예를 갖추지 아니하고 취한 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승적(承嫡)

서얼이 적자손으로 됨을 일컫는 말이다.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현재 우리 나라 사람의 이름은 대개 호적부(戶籍簿)의 이름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조선 말기 갑오경장이후 호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관례를 거행하고 성년(成年)이 되어서 별도로 보루는 이름 자(字) 또는 관명(冠名)이 있으며, 문필 등의 행세에는 이름의 아호(雅號)가 있고, 보첩(譜牒)에 올리는 항명(行名)이 있으며, 그 밖에 따로 행세(行世)하는 별호(別號) 등을 사용하여 왔다.

관명(冠名 이름)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조상)가 이름을 지어준다. 그이름을 그대로 호적에 올리면 바로 관명이 된다.

아명(兒名)

호적에 오르지 않은 다른 이름

자(字)

이름 대신에 불리워지는 호칭어를 바로 자라고한다. 자는 부모나 집안 어른이 지어주는데 자가있으면 곧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이다. 자는 성인(16세이상)이 되어 관례를 치르면 자를 부여한다. 자를 부여하면 어른으로써 사회활동을 할수있다는 뜻이다. 자는 이름대신에 부르도록한 명사이다. 사람을 부르는데 있어서는 그 이름을 불러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어색 하거나 결례가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관명 대신에 자를 불러주는 것이다. 호에는 존칭이 없지만 자에는 존칭은 쓰지 않는다. 자를 서로 호칭하는 사이는 동료지간이나 아랫 사람에게만 쓰인다.

호(號)

이름과 자이외의 호칭. 호는 아무나 있는게 아니다. 덕망이 특출하거나 학문 또는 예술이 뛰어나 지방이나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래야만 호가있다. 호는 남이 지어 주는 수도 있지만 대개 자기가 직접 짓는다. 남이 지어주는 송찬(頌讚)은

그사람의 인품이나 자질에서 호를 가질만한 사항을 들어 찬문과 함께 호를 만들어 준다. 대체적으로 호는 자기가 짓는 것이 더 많다. 퇴계도 자호하여, 퇴계, 도옹, 도수, 퇴도, 등 여러 가지로 썼다.

그런데 요즈음은 원만한 사람이면 모두 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흔한 서예학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호를 만드는데 이들이 호를 못가지란 법은 없다. 다만 책을 펴낸 문인이나 서예학원에서 글씨 쓰거나 문인화를 치거나 관계 없이 국전에 입선되어 전국이 알수 있다면 호를 쓰는것도 무방하다.

행렬(行列)

행렬자(돌림자)는 혈족간의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문중율법의 하나이기도 한다.

계촌(系寸)

부자는 1촌간이고 조손은 2촌간이며 증조손이나 숙질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말

계촌(計寸)

동족간에 있어 상대방과의 촌수를 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시호(諡號)

공신(功臣)이나 중신(重臣)이 죽은 뒤에 평생의 공덕(功德)이나 행적(行迹)을 기려서 나라에서 주는 명호(名號)를 일컫는다.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조 세종 4년(1422) 이후로는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에게만 주었으나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 등은 정이품이 못 되어도 시호를 내리었다. 시호를 정하는데 제조(提調)는 관계하지 않고 예조(禮曹)의 판서(判書)이하 만으로 의정(議定)하도록 하였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에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다.

사시(私諡)

학문이나 덕행이 세상에 높이 알려졌어도 관직이 증시(贈諡)할만한 지위가 못되어 역명지전(易名之典)이 없는 선비에게 붕우(朋友)들이나 일가나 향인(鄉人), 문제자(門弟子) 등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부조지전(不祧之典)

어떤 사람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모셔도 좋다는 은전(특별한 허락)을 받는 것.

불천지위(不遷之位)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어떤 사람의 신주를 말합니다. 줄여서 불천위(不遷位)라고도 합니다

행직(行職)

품계(品階)가 높은 관원(官員)이 직급(職級)이 낮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개고직비(階高職卑)이니 종일품계급(從一品階級)을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급(正二品職級)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행(行)자를 붙여 승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고 부른다.

수직(守職)

품계(品階)나 자급(資級)이 낮은 관원이 직급이 높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계비직고(階卑職高)이니 종이품계급(從二品階級)을 가진 이가 정이품계급(正二品階級)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수(守)자를 붙여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고 부른다. 행수직을 쓸 때는 행 . 수를 관명앞에 쓰되 7품이하의 자기의 품계에서

2계(階), 6품 이상은 3계를 뛰어 넘어서 관직을 받을 수 없었다.

영직(影職)

직함(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許職)과 같은 뜻이다. 즉 실제의 직무가 없는 명분상의 직을 의미하며,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리던 벼슬을 일컬으며 차함(借啣)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70이상의 전함노인(前啣老人)에게 직을 제수(除授)할 때에 당상관이상 슬록대부이하인 자에게는 영직을 가자(加資)해 주되 전직(煎職)을 그대로 내려주었고, 통정실행정삼품직사자(通政實行正三品職事者)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해당하는 검직(檢職)을 내렸고, 통정미경정삼품직사자(通政未經正三品職事者)에게는 전자당상관검직(煎資堂上官檢職)을 제수하게 한 경우와 같아서 실제로는 영직전생서주부(影職典牲署主簿), 검직에 빈주부(檣主簿)로 제수하는 따위이다.

실직(實職)

직사(職事)가 있는 관직(官職)으로 조선초기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散職)이 있으며, 실직 가운데에는 정식으로 녹봉(祿俸)을 지급 받는 녹관(綠官)과 그렇지 못한 무녹관(無祿官)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증직(贈職)

종이품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효자 혹은 학덕이 현저(顯著)한 사람에 대하여 죽은 뒤에 관직이나 품계를 추증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료(官僚)의 영전(榮典)으로, 첫째 명유(名儒), 절신(節臣) 또는 왕실(王室)의 사친(私親)에게 사후에 품직을 추증하는 것과 둘째 고관(高官)의 부친(父親)에게 추증하는 것이 있고, 셋째 봉명출강(奉命出疆)하여 신몰이역(身歿異域)한 자등 대상이 적지 않았다.

수직(壽職)

매년 정월에 80세이상의 관원 및 90세이상의 서민(庶民)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을 일컫는다.

배필(配匹)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그 표시는(배(配))만을 기록한다. 더러는 생 존한 배위에 대하여는 실인(室人)이란(실(室))자를 기록하며 죽은 사람에게만 (배(配))자로 표시하는 문중도 있다.

생졸(生卒)

모든 보첩에는 출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을 표시하게 마련인데, 출생은 ‘생’ 자만을 표시하며, 사망은 ‘졸’ 자만으로써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향년(享年)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누린 연륜을 일컫는 말인데, 70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에는 ‘향년 몇십 몇’ 이라 표시.

향수(享壽)

70세 이상의 연륜을 누린 사람에게 대해서는 ‘수 몇십 몇’ 이라 표시한다.

수단(修單)

단자를 정비한다는 뜻으로서, 보첩을 편찬할 수 있도록 직계혈족의 명휘자와 사적(방서)을 계대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수단(收單)

말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단자를 거둬 모으는 즉 수집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명하전(名下錢)은 수단금(收單金)이 아니라 수단금(修單金)이며, 접수기 한은 수단(修單)마감이 아니라 수단(收單)마감이야 한다.

서문(序文)

머리말로서 보첩의 서문이라면 대개 존조정신을 고취함과 아울러 보첩간행의
긴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목적의식(睦的意識)을 제도하는 것이 통례이다.

발문(跋文)

현대어로 편집후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첩의 편찬과 간행소감을 피력하게
된다.

유생(儒生)

성균관이나 사학 또는 향교에서 수학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

유학(幼學)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소과에도 아직 합격되지 아니한 백두의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후학(後學)

후배라라는 뜻으로 유학의 학풍을 따르는 학자가 자신을 일컫는 겸칭이다.

산림(山林)

산림처사의 준말로써 학덕이 숭고하되 벼슬을 외면하고 은거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세(世)와 대(代)

세란 것은 예컨대 조·부·기·자·손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대로 잡는 시간적 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

1世孫으로 세어 현손(玄孫=高孫)의 자가 5世孫, 그 아래는 6世孫····이 된다. 옛날에는 代孫도 많이 썼고 지금도 祝文은 代孫을 많이 쓴다.

정승(政丞)

백관의 장, 지금의 국무총리는 정승이라고 했다. 승은 보좌의 뜻이며 정승이라 함은 국왕의 정치에 대한 보좌직임을 나타낸 말이다. 고려의 충선왕이 종전에 '시중'이라 이르던 수상의 호를 '정승'이라 고쳤으나 뒤에 다시 번복하였다가 조선조에 와서 정종 2년에 국무최고기관을 의정부라 하고 그 수반을 정승이라 이르니 정승이란 칭호가 사용되기는 이때에 비롯되었다.

판서, 참판, 참의, 낭(判書, 參判, 參議, 郎)

육조의 장관을 조선조에서 판서(정2품)라 일컫고 차관을 참판(종2품)이라 일컬었다. 판이란 결정권을 가졌다는 뜻이다. 참판 밑에 참의(정3품)가 있어 정무에 해당한다. 판서, 참판, 참의는 모두 정3품 이상의 관이므로 이를 통칭당상관이라 부른다.

참의 이하의 속료로 낭관이라 일컫는 관직이 있는데 낭관 중에는 정랑(정5품) 좌랑(정6품)의 구별이 있다. 현재의 서기관에 해당한다.

대제학(大提學)

문관을 맡은 관서의 장을 말한다. 조선조초에는 예문관 대제학만 있었는데 세종 이후로 집현전, 후의 홍문관 대제학이 있어 양관에 대제학을 두었으며, 처음에는 이들이 각각 임명되어 오다가 세조조에 거저정이 양대제학을 겸한 후부터 드디어 이런 예를 이루었다. 이조에서는 제학이 됨을 문인 또는 문과출신관원의 최고명예로 알았으며, 더욱이 제학의 장은 두 타직을 겸임하였고, 특히 대제학은 본인 사퇴하기까지는 종신직으로 비록 직위가 영의정에 이르지라도 이를 겸임하게 되었다. 문학적 최고 능력자인 그 특수지위에 일반의 존경이 컸기 때문이었다.

한림(翰林)

조선시대의 예문관검열의 통칭, 조선조에서는 특히 예문관의 봉교 이하를 한림이라 일컬었으며, 더 좁게는 예문관의 최말직인 검열 한림이라 이르게 되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림’은 후자를 가리킨다. 한림은 군주의 문자를 대찬 함으로써 원직명의 밑에 한림검 지제고(知制誥)의 삼자를 부록한다. 이것을 ‘삼자어三字御’라 하여 세상에서 이를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었다.

승지(承旨)

승정원의 관원을 말한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군왕의 비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외 태소의 문서 및 주달이 모두 승지를 경유하니 그 임무의 중함이 타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감찰(監察)

사헌부의 한 관원(정6품)으로 지위는 가장 낮으나 제일선의 감찰을 담당했던 관계로 일하는 보람은 가장 큰 바 있었다. 지금은 법무부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것처럼 사헌부내에 감찰청이 독립해 있어서 직권상에는 자유행동이 가능하였다.

종중(宗中)

동족이 일부락 또는 한 지역을 구성하여 집단생활에 영위함에 그 동족간에는 고래의 관습에 의하여 반드시 일족의 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이 동족단체를 종중 또는 문중이라 칭하며, 어느 동족 단체에도 공통된 종규에 의해 동족의 단결과 선조의 제사를 목적으로 극히 원활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화수(花樹)

가계를 하나의 꽃나무에 비교해서 쓴 말이다. 한 성씨를 하나의 나무로 생각 하며 뿌리는 근원으로 조상을 나타내고 가지는 분파 또는 자손을 말하며, 꽃이나 잎은 많은 자손을 뜻하고 있다.

종규(宗規)

일족단체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며, 동본동성인 자는 한결같이 동족의 의를 지켜 일문의 종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가(宗家)

종중에는 반드시 자손이 있어 부락 또는 동족간에 있어서 최존선조의 가독 상속자로서 가묘를 지키고 제사를 주재한다. 이 종손의 집을 종가라고 한다. (봉군을 받은 종손은 종군이라 한다.) 고래의 한국 가족제도에서는 일가의 직계존속진이 생존하는 동안 대개의 경우 분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날에는 대가족제도의 가정이 많았던 것이다.

문장(門長)

종중에는 종손 외에 종장 또는 문장이 있다. 문장은 실로 일문의 장자로서 그 대표자이며, 종손이라 할지라도 종중에 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최존의 권위자이다. 문장의 선임은 각 종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향렬이 가장 높고 대조가 종조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유사(有司)

문장 밑에 몇 사람의 유사를 두고 유사는 문자를 보좌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유사의 선임은 공선이 보통이나 문장이 이를 지명하는 예도 있다.

종문회(宗門會)

문장이 종무를 집행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문회(宗會)를 열어 결정한다. 문회는 매년 제전(祭典)전후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문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대동종약소(大同宗約所)

종족간의 기관으로 그 조직에는 종래의 대종중을 변혁하여 그 대신으로 생긴 것과

대종중 외에 따로 설정된 것이 두 종이 있다. 종약소는 동일시조에서나온 남계 혈족 중인 남자인 종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종중재산(宗中財産)

종중에는 종중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체로 다소의 재산이 있으나 종재가 없는 성씨도 있다. 종중의 소유한 산림을 종산이라 하며 전답은 종토, 위토, 종전, 종답 등이라 칭하였고, 또한 제사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은 제위토, 제위답, 제산, 제전이라 하며, 묘지 관리를 위해 설정한 것은 묘전, 묘답 그리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설정한 것은 학전(學田), 학답(學畝)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르고 있다.

시향(時享)

시제와 공통된 말로서 종중의 대제를 말한다. 매년 사당에 지내는 제사를 말 하며, 음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를 시사라 하기도 한다. 이 제사는 일정한 의식에 따라 행하게 된다.

서원(書院)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고, 석학 또는 충절로 죽은 사람을 제향하는 곳이다. 그 기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주자의 백록 동 서원을 본받아 고려의 명유 안향이 전에 살던 백운동(영주군 순흥면)에 백운동 서원을 세워 그를 봉사하고 유생들에게 독서와 강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이 그 효시라 한다. 뒤에 이퇴계가 풍기군수로 취임하여 이 서원을 민간인의 경영에 맡겨두면 퇴폐될 염려가 있다하여, 도백에게 청하여 관비로 이를 지원해 주도록 했다. 이리하여 국가로부터 서적, 노비, 토지 등을 받아 경영의 기반이 튼튼해 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선조 때에 100개소에 달했고, 영조 때에 600개소에 향사선유의 수는 1349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서원의 난립에 따라 여러 가지 폐단 또한 없지 않아 고종초에 (1863~1907

제26대 조선 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47개소만 남겨두고 모두 정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승무유현(陞廡儒賢)

역대로 문묘에 유공한 유현으로 문묘에 종사된 이를 승무유현이라고 한다. 국학인 성균관에는 으레 문묘를 배풀고 공자를 모시는 동시에 동무, 서무, 양 무에 유공한 유현을 섭사한다.

향교(鄕校)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으로, 향사를 교육하는 곳이었다. 향교는 고려 인종 대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중간에 유명무실한 때도 있었으나 이태조 원년에 각 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부, 목, 군, 현의 소재지에는 반드시 향교를 설립하도록 하여 어느 고을이고 향교가 없는 곳이 거의 없었다.

사당(詞堂)

신주를 모시는 집을 사당이라 한다. 1390년(공양왕 2)에 가묘를 제정하라는 명을 내려 이때부터 각 가정의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짓게 되었다. 고려말의 학자 조준은 우리 나라에 옛날부터 가묘가 있었으나 중간에 없어 지고 다만 각 가정에 신사를 두어 그 집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여, 상고시 때부터 각 가정에 사당이 있었음을 주장한 바 있었고, 조선조 때 이제신은 정몽주에 의하여 비로서 사당을 두게 되었고 주장한 바 있어, 그 시초에 대 하여는 확실하지 않다.

봉군(封君)

군 또는 봉군은 고려 충렬왕 서기 129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써 종친이나 공신에게 주던 존호로서 정1품 이상으로 정해졌다. 그 후 1356년부터 6년간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公) 후(侯) 백(伯)의 작위(爵位)를 주다가 다시 1362년부터 부활하였다. 고려 초기 문종 때에는 상주국 또는 개국공, 후(開國公, 侯)란

훈계(勳階)를 정하고 정2품이상에게 주었던 것을 충렬왕 때에 와서군(君) 제도로 개칭한 것이다.

김은부(金殷傅) 김경용(金景庸) 김부식(金富軾, 부일, 부의) 등 3형제 김방경(金方慶) 등은 모두 상주국 혹은 개국공을 받았다.

고려사나 기타 문헌에도 이 기간중에 군호를 받은 사람은 없다.

다만 경순대왕이 고려에 양국한 후 상부(尙父) 시절에 낳은 아드님들에게 군호를 붙여 본관의 관시조로 하고 있으나 이 당시에는 군호의 제도가 없는 때다.

문과(文科)

古制 과거의 하나, 문관(文官)을 뽑던 시험(大科)현 고등고시와 같음

사마(司馬)(榜目)

조선조때 새로 小科에 합격한 進士, 生員의 이름

무과(武科)

고려때부터 무관(武官)을 뽑던 과거, 대개 3년마다 한번씩 식년(式年)에 무예, 병서를 시험보였는데,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의 세 단계가 있었음

음사(陰仕)

과거를 거치지 않고 다만 祖上의 혜택(惠澤)으로 얻은 관직. 남행(南行)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 등으로서하는 벼슬을 두루 일컬었음

증광(增廣)

조선조때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 기념으로 보이던 과거, 3대 태종원년(太宗元年) 즉 1401년에 처음 실시 되어 본디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는 의미로 즉위년(卽位年) 또는 이듬해 실시하였으나, 14대 선조(宣祖)때부터 확대 되어 국사가 있을 때마다 실시되었음

정시(庭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때 대궐 안마당에서 보이던 과거

별시(別試)

조선조때 나라에 경사가 있을시 특별히 보이던 과거세종원년(世宗元年) 즉 1419년에 처음으로 시작

외방별시(外方別試)

1456년(세조 2)에 평양에서 별시(別試)를 열어 문과 22명, 무과 1,800명을 선발한 것이 전례가 되어 국왕이 몽진(蒙塵)하거나 능침(陵寢)에 갈 때 행재소(行在所=임금이 머무르는 곳)에서 특별히 과거를 실시한 것으로 문무(文武) 양과만 있었으며 단일 고시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식년(式年)

자(子), 묘(卯), 유(酉) 등의 간지(干支)가 들어있는 해의 이름 곧 갑자(甲子), 정묘(丁卯), 병오(丙午), 계유(癸酉) 등으로 조선조때도 이해가 돌아오면 과거를 보이며, 호적조사를 하였음, (3년마다 돌아옴)

알성시(謁聖試)

국왕께서 문묘에 참배한 후 명륜당에서 실시하던 고시(考試)로서 문과, 무과 뿐이었으며, 문과는 단일시(單一試), 무과는 초(初), 증시(重試)로 구분하되 즉일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감시(監試)

국자감시(國子監試) 조선조에 생원 진사를 뽑던 과거 사마시(小科)

친시(親試)

조선조때 복시(覆試)에서 선발된 사람에게 왕이 몸소 나와서 시험을 보임

전시(殿試)

조선조때 복시(覆試)에서 선발된 사람에게 왕이 몸소 보이던 과거. 곧 최종의 시험으로 결과에 따라 갑(甲), 을(乙), 병과(丙科)로 등급을 정하였음
고려때부터 원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조선조때 제도화되었음

증시(重試)

문과 당하관(堂下官)을 위하여 둔 과거, 고려 18대 예종17년에 최초로 실시.
조선조 4대 세종 9년 (1427년)에 제도화되었으며, 10년에 한번씩 실시하여서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상(堂上) 정3품의 품계를 올려 주었음

황감시(黃柑試)

1641년(인조 19)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제주도(濟州道)에서 매년 12월에 진상하는 특산물인 감귤을 유생(儒生)들에게 나누어 주고 즉석에서 어제(御題)를 내려 고시하였으며 과목(科目)은 절일제(節日製)와 같았다.
처음에는 1등 한명만을 급제시키던 것을 1748년(영조 24)부터는 서울 유생과 지방 유생 중 각각 1명씩 급제시켰다.

춘당대시(春塘臺試)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실시하던 곳으로 관무재(觀武才)라 하여 군문(軍門)의 무사(武士)들을 1572년(선조 5)에 처음으로 창경궁(昌慶宮) 안에 있는 춘당대(春塘臺)에서 친임(親臨)하여 시험을 보였으며, 1783년(정조 7)부터는 문무를 겸한 양과(兩科)로서 이 역시 단일시(單一試)로 단일 즉방(卽榜)이었다.

갑과(甲科)

문과복시 합격자에게 예조(禮曹)에서 전시(殿試)를 보여 성적에 따라 나누었던 세 등급의 하나, 성적순에 따라 갑, 을, 병과로 구별, 갑과의 정원은 3명, 1등은 장원랑(壯元郎 - 종6품), 2등은 방안랑(榜眼郎 - 정7품), 3등은 탐화랑(探花郎 - 정7품)

을과(乙科)

조선조때 문과복시 합격자를 예조에서 전시를 보여 성적 제2위로 제술(製述)로 시험하여 7명을 뽑았다.

이들은 정8품의 품계를 주었고, 기성관리로서 승진을 위해 응시한자는 2품을 올려졌다.

병과(丙科)

제3위로 23명을 뽑았다. 병과에 합격된자는 정9품의 품계를 주며,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의 권지(權知: 임시직)에 임명한다.

동반관직

문관의 품계 - 정1품(종1품)부터 정9품(종9품)까지 18품계.

서반관직

무관의 품계 - 정1품(종1품)부터 정9품(종9품)까지 18품계.

관직의 정식 명칭

계(품계의 명칭) · 사(소속된 관칭) · 직(말은 직분) 순으로 썼다.

※ 대광보국승록대부 · 의정부 · 영의정

대광보국승록대부 - 계(품계의 명칭)

의정부 - 사(소속된 관칭)

영의정 - 직(말은 직분)

정일품(正一品)

1060년(문종 14) 처음으로 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할 때는 설정하지 않고 종1품(從一品)을 최고 품계로 하였다가, 1308년(충렬왕 34) 문관만 정1품을 두었으나 정1품을 위한 관직은 따로 두지 않았고, 그 명호(名號) 등 제도의 변개가

거듭되었다.

조선시대는 상·하의 구분과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종친·의빈(儀賓:국왕의 사위) 등의 구별이 있었다. 그러나 1865년(고종 2) 종친과의 빈의 품계를 모두 동반에 통합하고, 정1품 상의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와 정1품하의 보국승록대부 사이에 상보국승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를 설정하여, 국구(國舅)와 종친의 관계로 정하였다. 관직으로는 영의정을 비롯하여 좌·우의정, 검직의 영사(領事)

· 도제조(都提調), 각 군영의 대장(大將) 등이 있었고, 그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부부인(府夫人)·군부인(君夫人) 등 외명부(外命婦)에 봉작하였다. 1439년(세종 21) 정비된 녹과(祿科)의 제1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4석, 조미(, 米) 48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23석, 소맥 10석, 주(紬) 6필, 정포(正布) 15필, 저화(楮貨) 10장 등을 녹봉으로 받았다.

대군(大君), (君=正一品부터 從二品까지 있음) 공신(功臣)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이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부(師傅=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品 혹은 종一品을 제수한다.), 감사(監事=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종일품(從一品)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할 당시 종1품의 문관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라 하였으나 후에 개칭을 거듭하였고, 무산계(武散階)의 종1품은 995년(성종 14)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이라 정하여 고려 말까지 고치 지않았다.

문관직은 증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문하시중(門下侍中)·증서령(中書令), 상서성(尙書省)의 상서령(尙書令), 검직인 6부(部)의 판사(判事)와 한림원(翰林院)의 판사(判事), 사관(史館)의 감수국사(監修國史) 등인데, 무관직은 설정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종1품은 동반(東班:文官)·종친(宗親)·의빈(儀賓)으로 구별하고 서반(西班:武官)은 동반의 관계명을 따르도록 하였다가, 1865년(고종 2) 종친과 의빈도 모두 동반의 관계명으로 통일하였다. 관직은 의정부의 좌찬성(左贊成)·우찬성, 종친부·충훈부(忠勳府)의 군(君), 의빈부(儀賓府)의 위(尉), 돈녕부(敦寧府)·의금부(義禁府)·중추부(中樞府)의 판사(判事),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이사(貳師), 세손시강원(世孫侍講院)의 사(師)·부(傅) 등이다. 종1품관은 세종 때에 정비된 녹과(祿科)의 2과에 해당하며, 중미(中米) 12석, 조미(, 米) 43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21석, 소맥 9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0필, 저화(楮貨) 10장을 녹봉으로 받았다.

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제학(提學=규장각의 관직), 사부(師傅=세손강서원의 관직)

정2품(正二品)

고려시대 정2품 문산계(文散階)는 1060년(문종 14) 관계를 정할 때 특진(特進)이라 하였다가, 이후 상·하로 나뉘고 명칭도 여러 번 변경되었다.

995년(성종 14) 제정된 무산계(武散階)의 정2품은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으로 정하여져, 말기까지 상·하 구분 없이 그대로 있었다. 관직은 무관에는 해당직이 없고, 문관직으로는 문종 때를 중심으로 보면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중서시랑(中書侍郎)평장사·

문하평장사·중서평장사·좌복야(左僕射)·우복야·수국사(修國史) 등 정원은 7명에 불과하였다. 정2품관은 1076년(문종 30) 개 정된 전시과(田柴科)의 2과(科)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90결(結), 시지(柴地: 연료림) 50결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상·하의 구분과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 종친·의빈(儀賓: 국왕의 사위) 등으로 구별되었다. 1865년(고종 2)부터는 종친과 의빈의 품계를 모두 동반 관계에 통합하였다. 대표적 문관직으로는 6조(曹)의 판서(判書)·대제학(大提學)이 있고, 이 밖에 겸직의 지사(知事)·제조(提調)·판윤(判尹)·

좌참찬(左參贊) · 우참찬 · 좌빈객(左賓客) · 우빈객 등이 있었으나, 무관직은 거의 없었다. 정2품관은 1439년(세종 21) 정비된 녹과(祿科)의 3과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2석, 조미(, 米) 40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8석, 소맥 9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4필, 저화 8장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정2품부터는 대감(大監)이라 불렀다.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판서(判書), 대제학(大提學), 지사(知事), 판교(判校=규장각의 관직), 판윤(判尹),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도총관(都摠管).

종이품(從二品)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할 당시는 문관을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정하였으나, 후에 여러 차례 고쳤고, 무관은 995년(성종 14)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으로 정하여 고려 말까지 고치지 않았다. 문관직에 증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참지정사(參知政事)

· 정당문학(正堂文學) · 지사(知事), 상서성(尙書省)의 지사(知事)
· 중추원(中樞院)의 판사(判事) · 사(事) · 지사(知事) · 동지사(同知事), 사관(史館)의 동수국사(同修國史), 제관전(諸館殿)의 대학사(大學士), 국자감(國子監)의 제거(提擧) · 동제거(同提擧) 등이 있었다. 무관직은 설정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종2품 이상은 동반(東班:文官)과 서반(西班:武官)의 관계명이 같고, 종친(宗親) · 의빈(儀賓)의 구별이 있었으나 1865년(고종 2) 모두 동반의 관계명으로 통일하였다. 문관직으로는 6조(曹)의 참판(參判),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규장각(奎章閣) · 홍문관(弘文館) · 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 등이 대표적이고, 문관의 외관직(外官職)으로는 8도의 관찰사(觀察使), 부(府)의 부윤(府尹) 등이 있다.

무관직으로는 5위(衛) · 겸사복(兼司僕) · 내금위(內禁衛)의장(將), 훈련도감(訓練都監) · 금위영(禁衛營) · 어영청(御營廳) · 포도청(捕盜廳)의 대장, 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 · 총융청(摠戎廳) · 수어청(守御廳)의 중군(中軍), 총융청 · 수어청 · 관리영(管理營) · 진무영(鎭撫營)의 사(使),

용호영(龍虎營)의 별장(別將) 등이 있다. 무관의 외관직으로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 수군통어사(水軍統禦使) ·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 수군방어사 등이 있다. 종2품관은 녹과(祿科)의 4과에 해당하며, 중미(中米) 12석, 조미(米) 3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7석, 소맥 8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4필, 저화(楮貨) 8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군(君), 참판(參判), 대사헌(大司憲), 동지사(同知事), 관찰사(觀察使=도의감사), 좌윤(左尹), 우윤(右尹), 직제학(直提學=유장각의 관직으로서 정3품까지 있음), 유수(留守), 목사(牧使)=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提學),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제조(提調),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좌우유선은 정3품까지 있음), 대장(大將=정3품까지 있음), 부총관(副摠管), 중군(中軍=정3품까지 있음), 사(使=무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防禦使=종3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용호령)

정삼품(正三品)

고려시대에는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정할 때는 청광록대부(靑靑光祿大夫)라 하였다가 그후 상·하로 구분되고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다. 995년(성종 14)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정하여진 정3품 무산계(武散階)는 상·하의 구분 없이 말기까지 바뀌지 않았다. 정3품 문관직으로는 중앙 행정관서의 실질적인 장관인 6부(六部)의 상서(尙書)가 대표적인 관직이고, 좌상시(左尙侍) · 우상시 · 삼사사(三司使) · 판사(判事)도 현직(顯職)으로 꼽혔다. 무관직으로는 상장군(上將軍)이 최고 관직으로 군(軍)과 위(衛)의 장관이었다. 정3품 관은 1076년(문종 30) 개정된 전시과(田柴科)의 3과(科)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85결(結)과 시지(柴地:연료림) 40결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 정3품관은 상·하, 동반(東班:文官) · 서반(西班:武官) · 종친 · 의빈(儀賓)으로 구별되었는데 1865년(고종 2)부터 모두 동반의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정3품 상(上)의 관계부터 당상관(堂上官)이 되므로 정3품 벼슬은 상의 당상관에 오르느냐, 하의 당하관에 머무느냐에 따라 신분상 큰 차이가 생겨

벼슬길의 큰 갈림길이 되었다. 정3품 하에서 정3품 상의 당상관이 되면 흑각(黑角)을 쓰던 망건의 관자(貫子)를 옥으로 바꾸어 영귀(榮貴)의 표상으로 삼고, 공·사간에 영감(令監)이란 경칭으로 불리었다.

문관직으로는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사간원(司諫院)의 장관인 대사간(大司諫),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 6조(六曹)의 참의(參議) 등이 있고, 외관직(外官職)으로는 목사(牧使)·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무관직으로는 도정(都正)·선전관(宣傳官)·별장(別將)·천총(千摠)·진영장(鎭營將), 외관직으로는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순영중군(巡營中軍)·위장(衛將)·병마우후(兵馬虞候) 등이 있다.

정3품 당상관은 1439년(세종 21) 정비된 녹과(祿科)의 5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1석, 조미(, 米) 32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5석, 소맥 7석, 주(紬) 4필, 정포(正布) 13필, 저화(楮貨) 8장을 녹봉으로 받았는데, 정3품 당하관은 중미 10석, 조미 30석만 다르고 나머지는 당상관과 같았다.

부위(副尉=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僉尉=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3품까지 있음), 도정(都正), 대사간(大司諫), 대사성(大司成),

참의(參議), 부제학(副提學), 도청(都廳), 도정원정(都正院正),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첨지사(僉知事), 직각(直閣=종6품까지 있음)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제주(祭酒),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판결사(判決事), 대장(大將), 정(正), 시(寺), 원(院), 감(監), 사(司) 등의 관직,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판교(判校),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종3품까지 있음), 제검(提檢=종3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종9품까지 있음), 별장(別將=훈련도감), 천총(千摠=훈련도감),

상호군(上護軍),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목사가 겸임함), 목사(牧使),

사림위장(司林衛將), 부사(府使=대도호부), 국별장(局別將),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관성장(管城將).

종삼품(從三品)

18품계 중의 제6등급에 해당한다.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할 당시는 종3품의 문관을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정하였으나, 뒤에 이름을 여러 번 고치고 995년(성종 14)에 제정한 무관은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으로 정하여 끝까지 명칭을 고치지 않았다.

고려시대 종3품 문관직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직문하(直門下),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좌승(左丞)·우승, 육부(六部)의 지사(知事), 한림원(翰林院)의 수찬관(修撰官), 국자감(國子監)의 췌주(祭酒), 비서성(秘書省)·전중성(殿中省)·사천대(司天臺)의감(監), 각문(閣門)의 지사(知事), 위위시(衛尉寺)·대복시(大僕寺)·예빈성(禮賓省)·대부시(大府寺)·사재시(司宰寺)·군기감(軍器監)·태의감(太醫監)의 판사(判事), 태사국(太史局)의 지사(知事) 등이 있었다. 무관 직으로는 2군(軍)과 6위(衛)의 대장군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동반(東班:文官)·종친(宗親)·의빈(儀賓)·서반(西班:武官)으로 구별하였다가 1865년(고종 2) 동반으로 통일하였다. 문관직으로는 사헌부(司憲府)의 집의(執義),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 홍문관(弘文館)의 전한(典翰), 성균관의 사성(司成),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편수관(編修官) 등이 대표적이고, 종친부(宗親府)를 비롯한 각 시(寺)·원(院)·감(監) 등의 부정(副正)이 가장 많았다.

문관의 외관직(外官職)으로는 8도의 도호부사(都護府使), 승의전(崇義殿)의 사(使)가 있다. 무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대호군(大護軍), 선전청의 선전관, 훈련원의 부정(副正)이 있고, 외관직으로는 병마우후(兵馬虞侯)·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등이 있었다. 종3품관은 녹과(祿科)의 제6과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0석, 조미(, 米) 2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4석, 소맥(小麥) 7석, 주(紬) 3필, 정포(正布) 13필, 저화(楮貨) 6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첨위(僉尉), 부정(副正), 집의(執義), 사간(司諫), 전한(典翰), 사성(司成), 편수관(編修官), 참교(參校), 상례(相禮), 익례(翊禮), 내승(內乘=종九품까지 있음), 제거(提擧), 제검(提檢), 부사(府使), 대호군(大護軍), 진영장(鎭營將=부사 가

겸임함),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候= 정4품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관(宣傳官).

정사품(正四品)

고려시대는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정할 때 상·하로 나누어 상을 정의대부(正議大夫), 하를 통의대부(通議大夫)라고 하였다가 하나로 통합하였다. 공민왕 때 다시 상·하로 나누었다. 무산계(武散階)는 처음에 정한 상의 중무장군(中武將軍), 하의 장무장군(將武將軍)을 말기까지 두었다. 정4품 문관직으로는 간관(諫官)인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우간의대부, 6부(六部)의 시랑(侍郎), 한림원(翰林院) 등의 학사(學士)가 대표적인 관직이었고, 그 밖에 경(卿)·판사(判事) 등이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2군(軍)·6위(衛)의 장군이 있었는데, 정원이 49명이었다. 정4품관은 1076년(문종 30) 개정된 전시과(田柴科)의 6~8과(科)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75~65결(結), 시지(柴地:연료림) 45~35결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는 상·하,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종친의 구별이 있었다. 문관직으로는 사인(舍人)·응교(應教)·수찬관(修撰官)·편수관(編修官)·시강관(侍講官)·진선(進善)·필선(弼善)·사예(司藝)·사업(司業)·장령(掌令) 등이 있었고, 외관직(外官職)은 없었다. 무관 직으로는 호군(護軍)·선전관(宣傳官), 외관직으로는 수군우후(水軍虞候)가 있었다.

정4품관은 1439년(세종 21) 정비된 녹과(祿科)의 제7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8석, 조미(, 米) 25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3석, 소맥 6석, 주(紬) 2필, 정포(正布) 12필, 저화(楮貨) 6장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수정(守正), 전첨(典籤), 사인(舍人), 장령(掌令), 시강관(侍講官), 응교(應校),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사예(司藝), 사업(司業), 봉례(奉禮), 호군(護軍), 별제(別提=수성금화사의관직), 첨정(僉正=종4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 도선(導善), 우후(虞候), 제검(提檢=종4품까지 있음).

종사품(從四品)

18품계 중의 제8등급에 해당한다. 고려시대 종4품 문산계(文散階)는 처음에 상(上)을 대증대부(大中大夫), 하를 증대부(中大夫)로 정하였다가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여러 차례 고쳤으나, 무산계는 상을 위장군(宣威將軍), 하를 명위장군(明威將軍)으로 정하여 끝까지 고치지 않았다. 문관직으로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 삼사(三司)의 부사(副使)·지사(知事), 어사대(御史臺)의 지사(知事)·중승(中丞), 국자감(國子監)의 사업(司業), 비서성(秘書省)을 비롯한 각 감(監)·대(臺)의 소감(少監), 위위시(衛尉寺) 등의 소경(少卿)이 가장 많았다. 무관직은 설정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종4품은 동반(東班:文官)·종친(宗親)·서반(西班:武官), 그리고 상·하의 구별이 있었는데, 1865년(고종 2) 종친의 관계 명을 없애고 동반으로 합쳤다. 문관직으로는 충훈부(忠勳府)·의금부 등의 경력(經歷), 홍문관(弘文館)의 부응교(副應敎) 등이 대표적인 관직이고, 각 시(寺)·감(監)·원(院)의 첨정(僉正)·제검(提檢)이 가장 많았다. 외관직(外官職)으로는 승의전(崇義殿)의 수(守), 각 도의 군수(郡守), 평양부의 서윤(庶尹) 등이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중추부(中樞府)·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경력, 오위의 부호군(副護軍), 훈련원의 첨정(僉正), 선전관청의 선전관, 훈련원감을 비롯한 각 군영의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관리영(管理營)의 종사관(從事官)이 있었고, 외관직으로는 각 도의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수군동첨절제사(水軍同僉節制使)·병마만호(兵馬萬戶)·수군만호 등이 있었다. 종4품관은 녹과(祿科)의 제8과(科)에 해당되어 증미 8석, 조미(, 米) 23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2석, 소맥 6석, 주(紬) 2필을 연봉으로 받았다. 경력(經歷), 부응교(副應敎), 서윤(庶尹), 수(守)=사(司), 창(倉)의 관직, 부수(副守), 교감(校勘), 부호군(副護軍), 군수(郡守),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파총(把摠),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선전관(宣傳官), 제검(提檢),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정오품(正五品)

고려시대에는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정할 때 상·하로 나누어 상을

중산대부(中散大夫), 하를 조의대부(朝議大夫)라고 하였다가 뒤에 하나로 통합하고 명칭도 여러 번 변경하였다. 무산계(武散階)는 995년(성종 14) 상을 정원장군(定遠將軍), 하를 영원장군(寧遠將軍)이라 하고 말기까지 바꾸지 않았다. 정5품 문관직으로는 낭중(郎中)이 대표적인 관직이었고, 판관(判官)·시강학사(侍講學士)·사(使)·인진사(引進使) 등이 있었으며, 무관직으로는 2군(軍)과 6위(衛)의 중랑장(中郎將)이 있었다. 정5품관은 전시과(田柴科)의 8과(科)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60결(結)과 시지(柴地:연료림) 21결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상·하의 구분과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종친(宗親) 및 동반 토관직(土官職)·서반 토관직으로 구별되었다. 문관직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조와 병조의 정랑(正郎)이 있었다. 이 밖에 지평(持平)·헌납(獻納)·교리(校理)·검상(檢詳)·사의(司議)·시독관(侍讀官)·문학(文學) 직강(直講)·기주관(記注官) 등이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사직(司直)·선전관(宣傳官)·좌익위(左翼衛)·우익위, 토관직으로는 도무(都務)·여직(勵直)이 있었다. 정5품관은 녹과(祿科)의 제9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6석, 조미(米) 21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1석, 소맥 5석, 주(紬) 1필, 정포(正布) 11필, 저화(楮貨) 64장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령(令=종친부의 벼슬), 전부(典簿), 검상(檢詳), 정랑(正郎), 지평(持平),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사의(司議),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겸교리(兼校理),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직강(直講), 기주관(記注官=종5품까지 있음), 찬의(贊儀), 별좌(別坐=종5품까지 있음), 전훈(典訓), 전수(典需), 사직(司直).

종오품(從五品)

고려시대의 문관직으로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기거주(起居注)·기거랑(起居郎)·기거사인(起居舍人)·어사대(御史臺)의 잡단(雜端)·시어사(侍御史)·비서성(秘書省)·전중성(殿中省)의 승(丞), 각문(閣門)의

인진부사(引進副使), 사천대(司天臺)의 정(正), 태사국(太史局) 등의 영(令), 태의감(太醫監)의 소감(少監) 등이 있으며, 무관직은 설정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종5품은 동반(東班:文官) · 종친(宗親) · 서반(西班:武官) · 토관(土官)의 동반직, 토관의 서반직으로 구분되었다. 문관직으로는 판관(判官)이 압도적으로 많고, 영(令) · 도사(都事)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표적인 관직으로는 교리(校理) · 권독(勸讀) 정도이고, 지방관으로는 현령(縣令) · 도사 · 판관이 대부분이었다. 무관직으로는 선전관, 좌 · 우사어(左右司禦) · 판관 · 도사 · 부사직(副司直) · 종사관(從事官) 등이 있었다. 종5품관은 녹과(祿科)의 10과(科)에 해 당되어 중미(中米) 6석, 조미(米) 20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0석, 소 맥 5석, 주(紬) 1필, 정포(正布) 10필, 저화(楮貨) 4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부령(副令=종친부의 벼슬), 판관(判官), 도사(都事=종九품까지 있음), 별좌(別坐), 부교리(副敎理),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기주관(記注官), 령(令)=서(署), 궁(宮), 고(庫) 등의 벼슬, 현령(縣令), 부사직(副司直), 선전관(宣傳官).

정육품(正六品)

고려시대는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정할 때 상 · 하로 나누어 상을 조의랑(朝議郎), 하를 승의랑(承議郎)이라 하였다가 충렬왕 때부터 하나로 통합하였고, 명칭도 여러 번 고쳤다. 무산계(武散階)는 995년(성종 14) 상을 요무장군(耀武將軍), 하를 요무부위(耀武副尉)라고 하고 말기까지 바꾸지 않았다. 정6품 문관직으로는 좌보궐(左補闕) · 우보궐 · 원외랑(員外郎) ·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 봉어(奉御) · 영(令) 등이 있고, 무관직에는 낭장(郎將) · 별장(別將)이 있었다. 정6품관은 전시과(田柴科)의 8~11과(科)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60~45결(結), 시지(柴地:연료림) 21~12결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는 상 · 하의 구분과 동반(東班:文官) · 종친 · 서반(西班:武官) · 동반잡직(雜職) · 서반잡직 · 동반 토관직(土官職) · 서반 토관직의 구별이 있었다. 문관직으로 가장 대표적인 관직은 문 · 무관의 인사를 좌우하였던 이조와 병조의 좌랑(佐郎)이었다. 이 밖에 감찰 · 사평(司評) · 정언(正言) · 검토관(檢討官)

· 수찬(修撰) · 사서(司書) · 전적(典籍) · 교검(校檢) 등이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선전관(宣傳官) · 익찬(翊贊) 등이 있었다. 정6품관은 녹과(祿科)의 11과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5석, 조미(, 米) 18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9석, 소맥 4석, 주(紬) 1필, 정포(正布) 10필, 저화(楮貨) 4장을 녹봉으로 지급 받았다. 감(監=종친부의 벼슬), 좌랑(佐郎), 감찰(監察), 사평(司評), 정언(正言), 검토관(檢討官), 수찬(修撰),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전적(典籍), 기사관(記事官=정九품까지 있음), 교검(校檢), 전악(典樂), 사회(司誨), 별제(別提=종六품까지 있음), 평사(評事), 사과(司果), 장원(掌苑), 사포(司圃),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종육품(從六品)

고려시대의 문관직으로는 증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좌·우습유(左右拾遺), 어사대(御史臺)의 감찰어사·문리(文吏), 국자감(國子監) 등의 승(丞), 비서성(秘書省)의 낭(郎), 전중성(殿中省)의 내급사(內給事), 상약국(尙藥局)의 시의(侍醫), 좌·우창(左右倉) 등의 부사(副使)가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6위(衛)의 장사(長史)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종6품은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 동반의 잡직(雜職)·토관직(土官職), 서반의 잡직·토관직으로 구분되었다. 문관직으로는 홍문관(弘文館)의 부수찬(副修撰), 유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세손시강원(世孫侍講院)의 좌·우찬독(左右贊讀) 등이 대표적이고, 주부(主簿)·교수(教授)·별제(別提)가 거의 차지하였으며, 지방관으로는 현감(縣監)·찰방(察訪)·교수 등이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부장(部將)·선전관, 좌·우위수(左右衛率)·부사과(副司果), 좌·우장사(左右長史)·낭청(郎廳)·종사관(從事官) 등이 있고, 외관직으로는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감목관(監牧官)이 있었다.

종6품은 참상관(參上官)의 최 하위 계급으로,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한 1명에게만 주는 벼슬이다. 종6품관은 녹과(祿科)의 12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5석, 조미(, 米) 1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8석, 소맥 4석, 주(紬) 1필,

정포(正布) 9필, 저화(楮貨) 4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주학교수(籌學教授), 별전수(別典需), 율학교수(律學教授), 별제(別提), 천문
학교수(天文學教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教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教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教授), 명과학교수(命課學教授), 교수(教授), 부수찬(副
修撰), 좌찬독(左贊讀), 우찬독(右贊讀),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장
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기사관(記事官), 인의(仁儀), 부전악(副典樂), 사
축(司畜), 사지(司紙), 의학교수(醫學教授), 한학교수(漢學教授), 선화(善화),
부전수(副典需), 영(令)=능(陵)의 벼슬, 찰방(察訪), 현감(縣監),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종사관(從事官), 부장(部將),
낭청(郎廳=선혜청의 벼슬),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종九품까지 있음).

정칠품(正七品)

고려시대에는 정7품의 문산계(文散階)를 처음에 상·하로 구분하였다가 충렬 왕
때부터 하나로 통합하였고, 명칭도 여러 차례 고쳤다. 무산계(武散階)는
상(上)을 치과교위(致果校尉), 하(下)를 치과부위(致果副尉)로 정하여 말기까 지
바꾸지않았다. 문관직으로는 당후관(堂後官)·국자박사(國子博士)·승(丞)·
직장(直長)·영(令) 등이 있고, 무관직으로는 2군(軍) 6위(衛)의 별장(別將)이
있었다. 정7품은 말은 관직에 따라 전시과(田柴科)의 8~13과(科)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60~35결(結), 시지(柴地:연료림) 21~8결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정7품을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동반
잡직(雜職)·서반 잡직·동반 토관직(土官職)·서반 토관직으로 구분하고,
정7품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하여 최하위의 계급층을 형성하였다.
문관직으로는 주서(注書)·사경(司經)·박사·봉교(奉敎)·설서(說書)·
자의(諮議) 등이 있고, 무관직으로는 사정(司正)·선전관(宣傳官)·참군(參軍)·
부솔(副率) 등이 있었다. 정7품은 녹과(祿科)의 13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3석, 조미(, 米) 15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5석, 소맥 3석, 정포(正布) 7필,
저화(楮貨) 2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주서(注書), 봉교(奉敎), 대교(待敎=정九품까지 있음), 박사(博士),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사경(司經), 설저(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전률(典律), 참군(參軍), 좌부술(左副率), 우부술(右副率), 낭청(郎廳), 기사관(記事官), 수문장(守門將).

종칠품(從七品)

고려시대에는 문관의 관직으로 주부(注簿)와 영(令)·승(丞)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무관직은 설정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종7품은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 동반의 잡직(雜職)·토관직(土官職), 서반의 잡직·토관직으로 구분되었다. 문관직은 거의 직장(直長)이고, 그 밖에 산사(算士)·명률(明律)·전회(典會)·상설(常設) 등이 있으며, 지방관직은 없었다. 무관직은 부사정(副司正)·선전관, 좌·우종사(左右從史)가 있었다. 종7품관은 녹과(祿科)의 14과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3석, 조미(, 米) 14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4석, 소맥 3석, 정포(正布) 6필, 저화(楮貨) 2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직장(直長),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사(士=호조의벼슬), 명률(明律), 부전률(副典律), 선회(善繪), 부사정(副司正), 별회(別會).

정팔품(正八品)

고려시대에는 문관의 정8품을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가 제정될 당시 상·하로 구분하였으나, 충렬왕 때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그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다. 문관의 정8품은 995년(성종 14) 무산계(武散階)가 제정될 때부터 말기까지 상(上)을 선절교위(宣折校尉), 하(下)를 선절부위(宣折副尉)라 하였다. 문관직으로는 사문박사(四門博士)·주부(注簿)·영(令)·승(丞) 등이, 무관직으로는 산원(散員)·녹사(錄事)가 있었다. 정8품관은 1076년(문종 30) 개정된 전시과(田柴科)의 12~14과(科)에 해당되어 40~30결(結)의 전지(田地)와 10~5결의 시지(柴地:연료림)를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정8품을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동반 잡직(雜職)

· 서반 잡직 · 동반 토관직(土官職) · 서반 토관직으로 구분하였다.

문관직으로는

사록(司錄) · 저작(著作) · 설경(說經) · 대교(待敎) · 학정(學正)

· 부직장(副直長) · 별검(別檢) · 상제(尙除) 등이 있고, 무관직으로는

선전관(宣傳官) · 사맹(司猛) · 좌시직(左侍直) · 우시직 등이 있었다.

정8품은 세종 때에 정비된 녹과(祿科)의 15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2석

· 조미(, 米) 12석, 전미(田米) 1 석, 황두(黃豆) 4석, 소맥 2석, 정포(正布) 4필, 저화(楮貨) 2매를 연봉으로 지급받았다.

사록(司錄), 저작(著作), 설경(說經), 학정(學正), 부직장(副直長),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전음(典音), 별검(別檢=종8품까지 있음), 사맹(司猛).

종팔품(從八品)

고려시대 문관의 관직으로는 승(丞) · 영(令) · 주부(注簿)가 거의 차지하였다.

무관의 관직은 설정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종8품은 동반(東班:文官) ·

서반(西班:武官), 동반의 잡직(雜職) · 토관직(土官職), 서반의

잡직 · 토관직으로 구분되었다. 문관직은 거의 봉사(奉事)가 차지하고, 그

밖에 도사(都事) · 계사(計士) · 심률(審律) · 별검(別檢) 등이 있다.

무관직으로는 선전관 · 부사맹(副司猛)이 있다. 종8품관은 녹과(祿科)의

제16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2석, 조미(, 米) 10석, 전미(田米) 1석,

황두(黃豆) 4석, 소맥 2석, 정포(正布) 4필, 저화(楮貨) 2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계사(計士), 심율(審律), 봉사(奉事), 부전음(副典音), 별검(別檢), 전곡(典穀),

화리(化吏), 부사맹(副司猛).

정구품(正九品)

고려시대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처음으로 제정할 때 정9품을 상 ·

하로 나누어 상을 유림랑(儒林郎), 하를 등사랑(登仕郎)이라 하다가 1308년

(충렬왕 34) 정9품 상 · 하와 종9품 상 · 하의 명호(名號)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사랑(通仕郎)이라 하였고, 1356년(공민왕 5) 등사랑(登仕郎), 1362년 다시 통

사랑으로, 1369년 또다시 등사랑으로 고쳤다. 문산계보다 앞서 995년(성종14) 제정한 무산계는 정9품의 상을 인용교위(仁勇校尉), 하를 인용부위(仁勇副尉)라 하였다.

또한 향직(鄉職) 정9품은 상·하 구분없이 군윤(軍尹)이라 하였다.

정9품의 관원은 1076년(문종 30) 개정된 전시과(田柴科)의 13~15과(科)에 해당되어 25~35결(結)의 전지(田地)와, 8~5결의 시지(柴地:燃料林)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조선시대의 정9품에는 동반(東班:文官)의 종사랑(從仕郎), 잡직(雜職)의 복근랑(服勤郎), 토관직(土官職)의 계사랑(啓仕郎)과, 서반(西班:武官)의 효력부위(效方副尉), 잡직의 치력부위(致力副尉), 토관직의 여력도위(勵力徒尉)로 구분되어 있었다.

정9품 문관의 관직으로는 검열(檢閱)·전경(典經)·대교(待教)·정자(正字)·학록(學錄)·훈도(訓導)·부봉사(副奉事) 등이 있었다.

무관의 관직으로는 사용(司勇)·선전관(宣傳官)·세마(洗馬) 등이 있었다.

한편 정9품관은 1439년(세종 21)에 정비된 녹과(綠科)의 17과에 해당되어 조미(, 米) 10석, 전미(田米) 1석, 황두(黃豆) 3석, 소맥 1석, 정포(正布) 3필, 저화(楮貨) 1장을 연봉으로 지급받았다.

주학훈도(籌學訓導), 율학훈도(律學訓導), 정자(正字), 전경(典經), 검열(檢閱),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학록(學錄), 부봉사(副奉事), 전성(典聲),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의학훈도(醫學訓導),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 사용(司勇).

종구품(從九品)

18관등 가운데 최하위 벼슬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문관의 관직으로 정자(正字)·교감(校勘)·박사·조교(助教)·의관(醫官)·녹사(錄事)·학유(學諭)·직학(直學)·감후(監候)·사력(司歷) 등이 있었고, 무관의 관직으로는 대정(隊正)·대장(隊長)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동반(東班:文官), 서반(西班:武官), 동반의 잡직(雜職)과 토관직(土官職), 서반의 잡직과 토관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문관직으로는 참봉(參奉)·검률(檢律)·부정자(副正字)·학유(學諭)·전화(典貨), 외관직으로는 훈도(訓導)·심약(審藥)·검률·역승(驛丞)·참봉등이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선전관·부사용(副司勇)·수문장(守門將)·초관(哨官), 외관직으로는 별장(別將)·권관(權官)이 있었다. 종9품관은 녹과(祿科)의 18과(科)에 해당되어 조미(, 米) 8석, 전미(田米) 1석, 황두(黃豆) 2석, 소맥 1석, 정포(正布) 2필, 저화(楮貨) 1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회사(會士), 부정자(副正字), 분교관(分敎官), 학유(學諭),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부전성(副典聲), 전화(典貨), 회리(繪吏), 권관(權管),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부사용(副司勇), 초관(哨官).

부인의 품계

정경부인(貞敬夫人)

외명부(外命婦)의 하나로, 정(正)·종(從) 1품 문·무관의 처에게 주던 칭호인 데, 공주·옹주·부부인(府夫人)·봉보부인(奉保夫人:임금의 유모)과 동격의 대우를 받았다.

정부인(貞夫人)

정·종 2품 문·무관(文武官)의 처에게 남편의 품계에 따라 주던 것으로, 왕세자의 적출녀(嫡出女)인 군주(郡主), 종친의 처인 현부인(縣夫人)과 동격의 대우를 받았다.

숙부인(淑夫人)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외명부(外命婦). 문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 무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작호(爵號)이다.

숙인(淑人)

정3품 당하관인 문관의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인 어모장군(禦母將軍), 종3품 상위 문관인 중직대부(中直大夫), 하위인 중훈대부(中訓大夫) 및 종3품 상위 무관인 건공장군(建功將軍), 하위인 보공장군(保功將軍)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작호이다.

영인(令人)

정, 종4품관의 처에게 내렸다.

문무관 4품에 오른 남편들의 작호는 봉정대부(奉正大夫), 조산대부(朝散大夫), 진위장군(振威將軍), 정략장군(定略將軍) 등으로 나누어졌으나, 부인들은 통틀어 영인이라고 하였다.

공인(恭人)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정·종5품 문무관의 처에게 붙인 작호(爵號).

의인(宜人)

조선시대의 외명부는 왕·왕세자의 딸, 종친(宗親)의 처(妻), 문무관(文武官)의 처로 구분하여 봉작(封爵)하였는데, 의인은 정6품과 종6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린 명호이다.

안인(安人)

정7품·종7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품계.

단인(端人)

정(正), 종(從) 8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내린 작호

유인(孺人)

정·종9품(從九品) 문무관(文武官)의 아내인 외명부(外命婦)의 품계(品階)

구묘(丘墓)

분묘를 이루는 말인데, 보첩상에는 ‘묘’ 자만 표시하고 그 소재지와 좌향(방위), 그리고 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표시하며 배위와는 합장여부도 밝히는 것이 통례이다.

영역(榮域)

무덤을 쓰기 위하여 마련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묘역이라고도 한다.

봉분(封墳)

시체를 매장할 때에 무덤을 나타내기 위하여 큰 함지박을 엮어놓은 듯이 봉토를 쌓아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며, 분상이란 말은 봉분의 높임말이다.

용미(龍尾)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이 봉분의 좌우로 흐르도록 무덤의 꼬리처럼 쌓아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성(莎城)

무덤의 뒤와 좌우를 병풍처럼 나지막이 흙으로 둘러쌓은 성루를 일컫는 말인데, 속칭으로 토성이라 한다.

계절(階節)

무덤 주위의 평평한 곳을 일컫는 말인데, 흔히 이를 계절이라고 한다.

배계절(拜階節)

계절(階節)보다 한층 앞은 곳으로서 자손들이 절을 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곳을 일컫는 말이다.

순전(脣前)

무덤의 배계절앞의 내리바지 언덕을 일컫는 말이다.

분묘(墳墓)

분묘란 무덤의 총칭인데, 배위가 한데 매장된 곳을 합장 합묘 또는 합편(合窆)이라 하며, 각각 매장된 것을 각장 또는 각편이라 하고 이를 다시 좌우쌍 분 또는 상하쌍분으로 구분하여 이르기도 한다.

쌍분(雙墳)

같은 뒷자리에 합장하지 아니하고 나란히 쓴 부부의 두 무덤.

쌍조(雙兆)

같은 뒷자리에 나란히 쓴 부부의 무덤

쌍봉(雙封)

부부를 따로 봉분을 만들어 쓴 묘

단분(單墳)

각각 따로 쓴 묘

합장(合葬)

하나의 봉분(封墳) 속에 한 구 이상의 시신을 한 묘혈(墓穴)에 같이 매장하는 매장형태. 합장은 일반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무덤의 앞에서 보았을 때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매장함.

합봉(合封)

하나의 묘혈(墓穴)에 다수의 시신을 나란히 묻는 매장 형태.

합분(合墳)

하나의 묘혈(墓穴)에 다수의 시신을 나란히 묻는 매장 형태.

합조(合兆)

하나의 묘혈(墓穴)에 다수의 시신을 나란히 묻는 매장 형태.

합부(合附)

하나의 묘혈(墓穴)에 다수의 시신을 나란히 묻는 매장 형태.

합묘(合墓)

하나의 묘혈(墓穴)에 다수의 시신을 나란히 묻는 매장 형태.

합핍(合窆)

하나의 묘혈(墓穴)에 다수의 시신을 나란히 묻는 매장 형태.

단핍(單窆)

각각 따로 쓴 묘

부좌(附左)

부부를 합장하는데 아내를 남편에 왼편에 묻음

권조(權厝)

권장에 의하여 마련된 무덤을 권조라 하는데, 이를 권편(權窆) 또는 증편이라고도 한다.

완편(完窆)

훗일 개장할 필요가 없어 완장된 무덤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영구한 무덤이란 뜻에서 영편이라고도 한다.

예장(禮葬)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인데, 국장이나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국비로 예를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이다.

호석(護石)

능원이나 공신묘의 봉토를 둘러쌓은 돌을 일컫는 말인데, 능원에는 상석과 병풍석으로 쌓여져 있다. 이를 통속적으로는 ‘도래석’이라 일컬으며, 예장이 아닌 봉분에는 단지 봉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도를 둘러쌓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대석이라 일컫는다.

곡장(曲牆)

예장으로 치른 무덤 뒤에 나지막하게 둘러쌓은 토담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곡담’이라 일컫는다.

묘비(墓碑)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인데, 죽은 사람의 신분, 성명, 행적, 생년월일, 자손 등을 새기는 것이 통례이다.

신도비(神道碑)

예날 종 2품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무덤이 있는 근처 길가에 세우는 큰비석으로서, 그 비명은 통정대부(정 3품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문(韻文)을 붙여서 찬술하게 마련이다.

묘갈(墓碣)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그 문체는 신도비와 같으나 체재와 규모가 작고 빈약할 뿐이며, 비두에 가첨석을 얹는 것이 통례이다.

단갈(短碣)

무덤 앞에 세우는 작고 둥근 빗돌을 일컫는 말이다.

묘표(墓表)

묘표를 흔히 표석이라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관직, 명호를 전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그의 사적, 입석년월일과 입석자(사자손) 등을 새기는데, 이에는 운문을 달지 아니한다.

묘지(墓誌)

묘지를 행용 지석이라 일컫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 성명, 생년월일, 행적과 졸년월일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을 구어서 그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비신(碑身)

비두와 대석을 제외한 비문을 새긴 부분만을 일컫는 말인데, 그 재료로는 대리석(옥석), 애석, 오석, 화강석 등으로 되어 있다.

비두(碑頭)

비두를 두수라고도 하는데, 비신위에 얹는 돌을 일컫는 말이다. 그 형상에 따라 용두, 기린두, 봉두, 천록두, 벽사두, 가침석(개석, 개두) 등으로 구분하며, 비두가 없는 것을 유수(圭首) 또는 원수(圓首)라고 한다.

용대석(龍臺石)

이를 대석이라고도 하는데, 비신을 얹는 돌을 일컫는 말이다. 그 생김새에 따라 거북 모양으로 만든 것을 구부 또는 구대라고 하며, 단순히 장방형으로 된 것을 방부(方趺) 또는 평대라고 일컫는다.

비명(碑銘)

비석에 새기는 비문을 일컫는 말인데, 신도비나 묘갈 등 비신머리에 전자(篆字)로 새기는 문자를 두전이라 하며, 비석 앞면에 새긴 문자를 표기(비표명), 뒷면에 새긴 문자를 음기(비음명)라고 일컫는다.

석물(石物)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석인, 석수, 석주, 석등, 상석 등의 총칭이다.

혼유석(魂遊石)

상석 뒤 무덤 앞의 놓은 장방형의 작은 돌인데, 영혼이 나와서 놀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 한다.

상석(床石)

무덤 앞에 제물을 진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상돌을 일컫는 말인데, 정자각에서

제향을 모시는 능원에서는 혼유석을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대신한다.

고석(鼓石)

무덤 앞의 상석 앞을 고이는 돌로서, 북모양으로 생긴 둥근 돌인데, 이를 북석이라고도 한다.

결방석(결方石)

무덤 앞에 상석 뒤를 고이는 긴 돌(결방석)

향로석(香爐石)

묘제 때 향로와 향약을 올려놓는 돌로서 마석 앞에 설치하는데, 이를 향안석이라고도 한다.

준석(樽石)

묘제 때 술통이나 술병을 올려놓기 위하여 향로석 우측에 설치하는 납작한 돌이다.

계체석(階砌石)

계체석이란 계절(제절) 끝에 놓은 장대석을 일컫는다.

석의(石儀)

무덤 앞에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조각하여 설치하는 석상의 총칭이다.

석인(石人)

사람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문관석(文官石)

무덤 앞에 세우는 문인의 석상.

무관석(武官石)

무덤 앞에 세우는 무장의 석상.

동자석(童子石)

무덤 앞에 세우는 동자의 석상.

석수(石獸)

짐승의 모양으로 조각된 조각의 석상의 총칭이다.

석양(石羊)

양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석호(石虎)

호랑이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석마(石馬)

말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망주석(望柱石)

무덤 앞에 세우는 석주로서, 이를 망두석, 망주석표 또는 화표주라고 일컫는다.

석등(石燈)

무덤 앞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돌로 등대의 형상을 만든 것인데, 이를 석등 툽 또는 장명등이라고도 하며 밑에는 긴 받침대가 있고 중대석 위에 있는 점등 부분을 화사석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품재앙의 분묘에만 세울 수 있다.

재각(齋閣)

묘사의 향사를 위하여 마련된 건물의 총칭이다.

정자각(丁字閣)

능원의 제향을 위하여 마련된 건물의 총칭이다.

제청(祭廳)

묘사를 위해 지은 건물로서, 이를 제각, 재각(祭閣, 齋閣) 또는 재실이라고도 일컫는다.

묘막(墓幕)

참사자의 거처를 위하여 묘목 근처에 마련된 건물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병사라고도 한다.

비각(碑閣)

비석의 풍마우세를 말기 위하여 집안에 비를 넣고 축조한 건물을 일컫는 말이다.

장의(葬儀)

장사지내는 예절이란 말로서, 장례라는 말과 같다.

면례(緘禮)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지낸다는 말인데, 이를 천장(遷葬) 또는 이장이라고도 하며, 높임말로써 면봉이라고 한다.

환장(還葬)

타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향에 가져다가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귀장이라고도 한다.

반장(返腸)

객사에 가매장했던 시체를 제고장으로 옮겨서 지내는 장사를 일컫는 말인데 이를 반구라고도 한다.

권장(權葬)

풍수설에 따라 좋은 산지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가매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노장(路葬)

죽은 처녀나 총각의 영혼이 악귀가 되어 화를 미치는 일이 없도록 왕래가 빈번한 행길 복판에 매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수장(水葬)

죽은 사람을 물속에 넣어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화장(火葬)

시체를 불사르고 남은 뼈를 모아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분장(焚葬)이라고도 한다.

평장(平葬)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지와 같이 평평하게 이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흔히 입장할 때에 이러한 일이 많다.

나장(裸葬)

장사지낼 때 관을 쓰지 않거나 또 썼더라도 하관할 때에 물려내고 시체만을 매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허장(虛葬)

허장에는 다음의 3종류가 있다.

- ① 남의 땅에 거짓 장사지낸 것처럼 하여 땅임자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한 헛장사. ② 병이 치유된다는 미신에 의하여 병자를 죽은 사람처럼 꾸미어 거짓 지내는 장사. ③ 종족이 없어진 사람의 가시체를 꾸며서 장사지내는 것, 이러한 경우에 시체 대신 의관만을 묻기도 하는데, 이를 의관장이라 한다.

계장(繼葬)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자손의 무덤을 잇대어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도장(盜葬)

계장과는 반대로 자손의 시체를 조상의 무덤 윗자리에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다.

투장(偷葬)

남의 묘역에다 몰래 도둑장사 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도장 또는 암장이라고도 한다.

갈장(渴葬)

장기(예월)을 기다리지 않고 급히 치르는 서인의 장례를 일컫는 말이다.

과장(過葬)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 그 일정한 장기를 지나도록 장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지학(志學)

15세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

약관(弱冠)

20세 남자 나이 스무살을 뜻함

이립(而立)

30세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

불혹(不惑)

40세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

상수(桑壽)

48세 상(桑)자를 십(十)이 네 개와 팔(八)이 하나인 글자로 파자(破字)

지명(知命)

50세 천명(天命)을 아는 나이. 지천명(知天命)이라고도 함

이순(耳順)

60세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받아드리는 나이

환갑(還甲)

61세 일(一) 갑자(甲子)가 돌아왔다고 해서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하고 경축하여 華甲(화갑)이라고도 한다

종심(從心)

70세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고희(古稀)라고도 한다

희수(喜壽)

77세 희(喜)자를 칠(七)이 세번 겹쳤다고 해석

산수(傘壽)

80세 산(傘)자를 팔과 십의 파자(破字)로 해석

미수(米壽)

88세 미(米)자를 팔과 십과 팔의 파자(破字)로 해석

졸수(卒壽)

90세 졸(卒)자를 구와 십의 파자(破字)로 해석

망백(望百)

91세가 되면 100살까지 살 것을 바라본다 하여 망백

백수(白壽)

99세 일백 백자(百)에서 한일자를 빼면 흰백자(白)가 된다하여 99세로 봄

상수(上壽)

100세 사람의 수명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 左傳에는 120세를 상수로 봄